



원산지 표시 확인

III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.

- ▶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 · 생산 · 제조 ·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, 자본투자국 · 디자인 수행국 · 기술의 제공국 · 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.
- ▶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*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* Hong Kong, Macao, Guam,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. 반면, EU, NAFTA, ASEAN 등 지역 · 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(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)

III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.

- ▶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,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상물품	표시방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개기된 수입물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, 한자, 영문으로 표시 “원산지 : 국명”, “국명 산 (產)”, “Made in 국명”, “Product of 국명”, “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, 국명”, “Country of Origin : 국명” •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• 인쇄, 등사, 낙인, 주조, 식각,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(올바른 원산지표시 Tip 참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% -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,224개 중 674개 (공산품 501개, 농수산물 173개) 	

- ▶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.

완전생산기준	실질적 변형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•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- 주로 농산물, 광산물, 어획물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물품의 생산 · 제조 · 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• “실질적 변형”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번변경기준[HS 6단위]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*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기공공정기준 적용 - 다만,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

■■■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(통관 · 유통단계)

-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
-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
-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
-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

▶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

구분	제재조치	내 용			
통관단계	통관제한 및 시정명령	▶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*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, 이를 보완 · 정정한 후 통관 허용			
유통단계	보세구역 반입명령	▶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-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-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*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			
통관 및 유통단계	과징금 부과 (최대 3억원)	위반 유형 허위, 손상, 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	1차 (통관단계) 시정명령 (유통단계) - 미판매분 : 시정명령 - 판매분 : 과징금(30%경감)	2차 시정명령 과징금	3차 시정명령 과징금(50%가중)
통관 및 유통단계	고발 · 송치 의뢰 (징역 5년, 벌금 1억원 이하)	▶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 · 변경한 경우 ▶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▶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▶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 · 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▶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			
유통단계	과태료 (최대 1천만원)	▶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	

*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시 · 도지사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.

올바른 원산지 표시 TIP

-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(「대외무역관리 규정」별표8)하고 있습니다.
-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,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 - “원산지 : 국명” 또는 “국명 산(產)”
 - “Made in 국명” 또는 “Product of 국명”
 - “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, 국명”
 - “Country of Origin : 국명”
 -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(원산지 판정 기준)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
-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 -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
 -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
 -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
 - 제조단계에서 인쇄, 등사, 낙인, 주조, 식각,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(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, 라벨, 스티커,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)
 - 다른 법령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식품위생법 등)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(또는 제조국)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
-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,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
 -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, 대외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
-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, 시·도지사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.



문의처

☞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-481-7644, 기획심사팀 042-481-7897